

전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가단187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차종선, 진현덕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와 피고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9. 7. 18.자 설정계약을, C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9. 9. 19.자 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C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임실통기소 2019. 7. 18. 접수 제63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통기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임실통기소 2019. 9. 23. 접수 제82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통기의 각 말소통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9.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D이 E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3억 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2016. 3. 9. E은행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은 이 사건 회사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위 대출의 원리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9. 11. 29. E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288,753,254원을 대위변제한 후 위 대위변제금과 대지금금 513,974원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및 C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2019차전1126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3. 위 법원은 ‘이 사건 회사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267,228원 및 그 중 288,753,254원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 27. 확정되었다.

다. C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2019. 7.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전주지방법원 임실통기소 2019. 7. 18. 접수 제6360호로 근저당권설정통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2019. 9.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전주지방법원 임실통기소 2019. 9. 23. 접수 제82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통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사해행위 당시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및 C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유지되어 오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19. 8. 19. 부실처리되었으므로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사해행위 당시에 C는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며, 채권자 중의 한사람인 피고들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과 C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C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대부분 2019. 11. 29. E은행에 대위변제금 288,753,254원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성립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들 이전에 이미 원고와 이 사건 회사, C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9. 7. 18.과 2019. 9. 19.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부실처리되거나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해행위 당시에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부실처리되어 원고가 2019. 11. 29. 대위변제를 함에 따라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음으로 C의 무자력 여부에 대해서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완주군청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가 무자력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무자력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별지